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38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6.

발 의 자 : 문미옥 · 고용진 · 윤종오

김정우 · 신용현 · 박 정

이원욱 · 신경민 · 김병관

홍의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·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,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제14조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에”를 “제14조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 제8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교육공무원 등의 휴직·겸직 협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(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5조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)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21조(교육공무원 등의 휴직·겸직 협용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제</p> <p>14조, 「<u>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</u>」 제12조의3 및 「<u>울산과학기술원법</u>」 제8조에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